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-120호

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: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, 통합지원협의체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(안 제1조)

나. 통합지원협의체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임을 명확히 함(안 제11조)

다.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위원의 범위 추가 (안 제12조제4항제4호)

라.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16조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11월 4일

나.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

- 주소 : (3015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
- FAX : (044) 300-7219 / E-mail : zian1121@korea.kr

라. 문의처 : (044) 300-7313

붙임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지역계획 수립·시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”을 “매년”으로, “대하여”를 “대한”으로, “반영할 수 있다”를 “반영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지역계획”을 “법 제8조에 따라 지역계획의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상자에게”를 “대상자에 대한”으로, “업무를 수행하기”를 “사항을 논의하기”로, “운영한다”를 “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,”를 “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, 관할 보건소 및 읍·면·동의 업무 담당자,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

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”를 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통합지원협의체”를 “협의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협의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추천하는 자”를 “추천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·사회적협동조합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「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주민자치회 등에 소속된 사람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포상)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·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~ ③ (생 략)	제4조(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·시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	④ ---- 매년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대한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반영해야 한다.
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·단	⑤ ---- 법 제8조에 따라 지역계획의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<후단 삭제>

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	
제8조(통합지원회의)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. 1. ~ 3. (생 략)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담당자,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시 지역 업무 담당자, 시장이 지정한 건강, 주거,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	제8조(통합지원회의) ① ------- ------ 대상자에 대한 ------ --- 사항을 논의하기 ------- ---------- 운영할 수 있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 전담조직의 업무담당자, 관할 보건소 및 읍·면·동의 업무 담당자,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
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(생 략)	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---- --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	제12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 ① 협의체---------- ----------

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	④ ---------- 협의체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	3. ---------- 추천하는 사람
<신 설>	4.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·사회적협동조합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「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주민자치회 등에 소속된 사람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⑤·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6조(포상)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·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